



청력보존 프로그램



『청력보존 프로그램』이란?

-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.
 - 소음 노출 평가
 - 소음 노출기준 초과에 대한 공학적 대책
 - 청력 보호구의 선택, 지급 및 착용 관리
 - 소음의 유해성, 건강 영향과 청력손실 예방에 관한 교육
 - 정기적 청력검사 및 평가, 사후관리
 - 청력보존 프로그램 관련 문서 작성 및 기록 관리 등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(정의) 5호 참조



『청력보존 프로그램』 시행의 근거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(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)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다음의 경우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
 -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



소음에 의한 영향

일시적 영향	영구적 영향
■ 혈압, 맥박, 호흡 등 증가, 전신 근육 긴장 ■ 기억력 감퇴, 주의력 산만 ■ 일시적 청력 손실 (회복 가능한 수준)	■ 영구적 청력 손실에 의한 소음성 난청 발생 (회복 불가능한 수준) ■ 소음성 난청은 주요 직업병의 하나로 의사소통 장애에 의한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 ■ 개인 삶의 질 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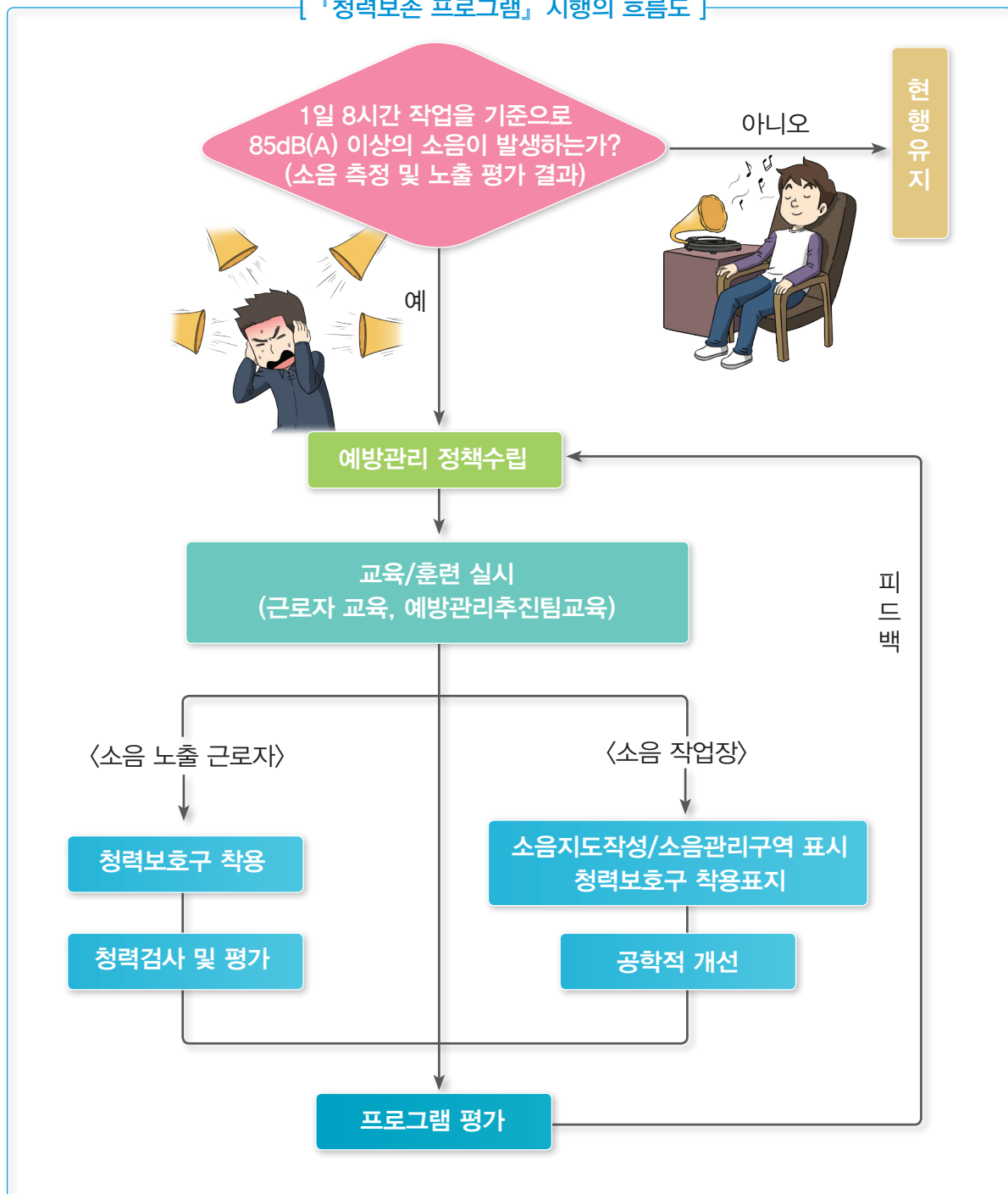




『청력보존 프로그램』의 목표

- 적극적인 소음성 난청 예방과 청력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
- 작업장의 소음 관리 및 근로자의 청력 보호
-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
- 의료보상 비용 절감 및 근로손실 일수 감소
-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및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

[『청력보존 프로그램』 시행의 흐름도]





『청력보존 프로그램』의 시행



청력보존 프로그램 운영체계 구축

- 사업장의 업종, 규모 등 특성에 따라 청력보존 프로그램 추진팀 구성
 - 보건관리자, 보건관리 담당자,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, 예산결정권자, 정비보수 담당자, 구매담당 등으로 구성
 - 청력보존 프로그램 관리자(운영자) 지정
-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근로자에게 결과 안내 및 교육 등의 활동 체계 및 주기를 설정하고 정기적 추진
-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의 지원 및 자문 등 협조체계 구축 및 활용
-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및 협조 방안 마련 · 추진



소음 측정 및 노출평가 관리

- 측정 대상 : 80데시벨 이상의 모든 연속음과 120데시벨 이상의 충격음
- 측정 주기 : 6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 측정 · 평가
- 결과 통보 : 8시간 시간가중평균(TWA) 90데시벨(dB(A))이상 노출 근로자
- 생산설비 변경 또는 증설 등 작업환경 변화 시 수시 평가 실시
- 청력보존 프로그램 적용 대상 작업장 위치도(소음 지도 등) 작성
- 청력보존 프로그램 적용 대상 근로자의 분포(소속 부서, 연령, 성별, 근속년수 등) 및 건강상태(청력 손실도 변화) 파악



청력 검사 및 청력손실 근로자 관리

- 배치 전 및 연 1회 정기 청력검사 실시
- 청력검사결과 분석 및 관리
- 청력손실 근로자 사후관리 실시
 - 정밀 검사 : 청력 저하자, 귀(耳) 질환 및 증상자에 대한 청력 정밀평가 및 이비인후과 검사 실시
 - 비작업성 청력장애 시 이비인후과 검사, 치료 및 재활 필요성 통보
 - 청력 보호구 미착용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
 - 청력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차음력이 더 높은 청력보호구 선택 · 지급





공학적 개선 대책 등 추진

- 소음 노출 기준 초과 시 대상 공정의 시설, 설비에 대한 차음 또는 흡음 조치 등 개선대책 추진
- 작업방법 개선을 통한 소음감소 대책 추진
- 공학적 개선대책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적 대책 등 추진
 - 청력 손실자 업무(부서) 전환, 근무 시간 단축 또는 순환 근무를 통한 소음 노출 감소 조치
 - 청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



공학적 개선대책 (차음/흡음조치)



근로자 교육 및 상담

- 전체 근로자 교육(연 1회 이상)
- 청력손실 근로자에 대한 수시 교육 훈련 및 개인 상담 실시
- 소음발생 작업장 또는 공정에 소음 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 등



청력 보호구 지급 및 착용

-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적합한 개인전용 보호구 지급
- 작업장 입구 등에 보호구 보관함 설치
- 보호구 및 보호구 보관함에 대한 관리
- 현장 순회 시 보호구의 상태, 착용 상태 점검 및 개인별 지도
- 소음발생 부서별 보호구 착용률 비교 및 결과 게시
- 청력 보호구 착용 모범 부서 및 근로자 표창 실시
- 청력 보호구 착용 규정 위반 시 벌칙 규정 마련 및 적용
- 경고음 또는 경보(알람) 신호를 소리로 들어야 하는 청력 보호구 착용 근로자는 교육을 통하여 경고음 숙지, 가급적 시각적 경고 또는 알람 신호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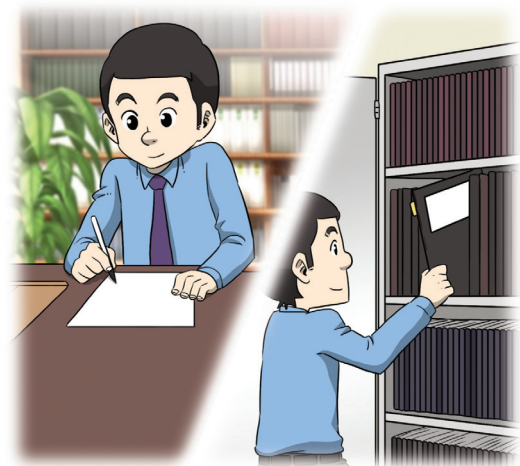


청력보호구 착용



청력보존 프로그램 문서 및 기록 관리

-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계획서
- 소음노출 평가 결과
- 청력검사 결과 자료 및 평가에 따른 관리 기록
- 청력 보호구 지급과 관리 및 착용 실태
-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대책
- 관련 문서 보관
 - 소음 노출 평가결과 : 최소 5년 이상
 - 청력검사 자료 : 퇴직 시까지



청력보존 프로그램 문서 및 기록 관리